

KBIZ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수 신 전 조합원업체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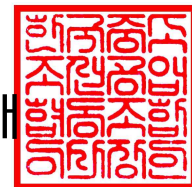
(경유) 직접생산확인 담당자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운영 철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규정에 따라 2007.01.01.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본 조합에서는 매3년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선박(총톤수 G/T 1,000톤미만)”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지정받아 조합원업체에서 공공기관 입찰참여시 활용하고 있으며,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선박)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4. 선박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생산시설을 모두 구비한 채 필수공정(선각공사→의장공사→기관공사→진수 및 시운전(검사))을 ‘전부’, ‘직접’ 수행하여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최근 일부 중소기업에서 하청생산, 필수공정 미이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거나, ②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납품, ③생산설비 임대, 매각, 생산인원 축소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 ④다른 공장에서 제품 생산, ⑤타사에서 필수공정이행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관련 안내 1부. 끝.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 성 태



전결(2025/05/14)

담당 홍태훈 전무이사(권한대행) 신정철

협조자

시 행 회원사업부-60호 (2025. 05. 14.) 접 수

우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03, 4층(조선회관) / <http://www.kosic.or.kr>

전화 (02)587-3121 전송 (02)588-3671 / jcshin@kosic.or.kr / 공개